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0호(2015. 1. 26)」로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동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95호(2017. 8. 21)」로 「도시개발법」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는 물건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가. 사업의 명칭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
- 나. 사업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170-3번지일원
- 다. 사업 시행자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 라. 사업의 면적 : 567,567㎡
- 마. 사업의 기간 : 2017. 8. 21(실시계획인가일) ~ 2021. 12. 31(환지처분일까지)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물건조서의 상세내역은 물건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기간 중 열람 장소에 비치합니다.

3. 열람장소 및 기간 등

- 가. 열람장소
 -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한들1로 55, 3층(백석동)
(전화 : 032-565-6343, 전송 : 032-565-6376)
 -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개발과 (전화 : 032-560-4783)
- 나. 열람기간 : 2017년 9월 6일(수) ~ 9월 22일(금) 10:00~17:00 (15일간)
(열람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의신청 : 공고 또는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물건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보상시기 : 2018년 2월 전후

개인별 보상대상 물건의 내역, 보상액, 보상절차, 협의기간 등의 구체적 사항은 보상시기에 손실보상협의 요청서를 개별통지 합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부동산가액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업자 3인(다만, 시·도지사와 물건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물건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

보상계약체결 후 토지 등을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다. 감정평가업자 추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합니다.

[감정평가 업자 추천서]

토지소재지	편입지번	편입면적(m ²)	소유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추천감정 평가법인	비고
			주소	성명				

*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토지소유자 신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첨부). 그리고, 소유자의 사망이나 거소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물건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 등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개별통지하나, 물건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보상관련 공지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도메인 www.ichd.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9 월 6일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장

